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8월 11일 안대천 의원 등 14명

나. 회부일자 : 2026년 9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33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6. 9. 11.)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안대천 의원)

가. 개정이유

❍ 각종 범죄에 취약한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에 대해 규정함 (안 제2조의2제8호)

❍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다.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종율)

❍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범죄에 최약한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에 최약한 소상공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범죄 발생 현황과 범죄 취약지역, 업종별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범죄예방 효과가 높은 지원대상과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기존 범죄예방 사업 및 관계기관의 지원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 외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 략

5. 토론의 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